

심 사 보 고 서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2023. 6. 2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9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조덕진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 「행정기본법」(2023. 6. 28. 시행)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우리 道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·정비하려는 것임.

※ 만 나이 원칙에 관한 「민법」 개정(법률 19098호)시 “만 00세”를 “00세”로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 (안 제1조)
 - “만 60세 이상” → “60세 이상”
-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(안 제2조)
 - “만 32세 이하” → “32세 이하”
-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안 제3조)
 - “만 12세 이하” → “12세 이하”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(안 제4조)
 - “만 19세 미만” → “19세 미만”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기본법」이 나이를 '만(滿) 나이'로 계산하고 연수(年數)로 표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'만(滿) 나이'를 적용하는 충청북도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이 '만(滿) 나이'로 통일됨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 중 '만 나이'를 규정한 「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4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

< 만 나이 사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>

구 분	현 행	개정안	비고
「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	만 60세 이상	60세 이상	
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	만 32세 이하	32세 이하	
「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	만 12세 이하	12세 이하	
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3조	만 19세 미만	19세 미만	

-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'만(滿) 나이'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,
 - 일상생활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세고 새해가 되면 한 살 증가하는 '세는 나이(한국식 나이)'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
 - 또한, 「병역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'연 나이'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
- 이처럼 나이 계산 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·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행정적·사회적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
 - "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1)"에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·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추진됨
 - 「행정기본법2)」 및 「민법3)」(22.12.27.개정 / '23.6.28.시행)에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여 '만(滿) 나이'로 계산하고 연수(年數)로 표시하도록 명문화하였음

1) 13번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: (나이 기준 통일) '만 나이'로 법적·사회적 기준 통일
 2)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 3)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'만 나이'를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4개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괄정비하여 불필요한 혼선과 사회적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 중 '만 나이'를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
 -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'만 나이'를 사용함으로써 나이로 인한 혼란이나 다툼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,
 -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」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기업
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중 “만 60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만 32세”를 “32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
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
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제4조제1항제6호의 ‘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’은 <u>만 60세</u>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60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2.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삭제</p> <p>6. “차세대농업인”이란 농업계 고등학교, 농업계 2년제대학,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<p><u>32세</u>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<u>32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3.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이용방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<u>만 12세</u>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이용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12세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4.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<u>만 19세</u>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.</p> <p>12. ~ 17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.</p> <p>12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행정기본법(2022. 12. 27. 법률 제191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. 6. 28. 시행 예정)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□ 민법(2022. 12. 27. 법률 제190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. 6. 28. 시행 예정)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2023. 6. 28. 시행 예정인 개정 「행정기본법」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만 나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 소관 조례의 조문에서 “만”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